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의뢰심사를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대응, 재해복구 등 신속한 추진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의뢰심사 의무화 등
(안 제3조)

-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으로 하면서,
- 2)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함

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 전문성 강화(안 제4조의2)

보증채무 포함, 부동산PF 등 신종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성, 법률상 쟁점 등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수도 현행 21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다. 투자심사 면제 협의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제4조의3)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투자심사 면제 협의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라. 보증채무 등 포함사업에 대한 재심사 요건 마련(안 제6조)

- 1) 최초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변경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사업도 재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함
- 2) 당초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경우에 총 사업비 증가 등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에 의뢰하도록 함

마.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제9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를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근거 마련
(안 제1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 진행 중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13. ~ 5. 2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③ 영 제41조제4항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1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심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

양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로 본다.

⑧ 위원회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투자심사의 협의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소요자금조달,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자심사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투자심사 후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부담액이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채무의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동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

8.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및 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 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중앙의뢰심사 가. ~ 마. (생 략) <u><신 설></u> 바.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u> <u>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u> <u>사업</u> 사. (현행 바목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41조제4항 부분 단서에</u> <u>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u> <u>는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u> <u>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u> <u>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u> <u>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u> <u>민간투자대상사업(다만, 「사회</u> <u>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u>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이</u> <u>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은 제외하</u> <u>다)을 말한다.</u>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

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두고,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 30명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심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로 본다.

⑧ 위원회는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민간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 제8항-----

--.

제4조의3(투자심사의 협의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소요자금조달,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제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
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생략)

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
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자
심사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
보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재심사)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투자심사 후 법 제37조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
상이 되는 사업의 내용이 변
경되는 경우, 부담액이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채
무의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
이 변동되어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하는 사업

8.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타
당성 재조사를 받은 사업

9.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④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생략)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 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 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및 그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